

보 고 서

등록번호	규제법무감사팀-
등록일자	2011.9.
결재일자	2011.9.
공개구분	비공개

담당	사무관	과장	국장	차장	청장
협조자					

제 목 :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

< 보고 요 지 >

2011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○○○○ 등 3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I. 감사개요

- 기 간 : 2011.5.17(화) ~ 8.26(금) (기간 중 13일간)
- 감 사 자 : 행정사무관 ○○○ 등 5명
- 대상기관 : ○○○소, ○○○소, ○○○ 등 3개 소속기관
- 감사대상 : 전(前)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중점 : 세입·세출예산 집행, 공사 및 시설물 관리, 물품 및 유물관리,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등

II. 감사결과 : 총 10건

- 행정상 조치 : 기관주의 3건, 주의 1건, 시정 5건, 개선 1건

III. 조치계획

-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
-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

붙임 :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1부. 끝.

기 획 조 정 관
규 제 법 무 감 사 팀

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

I. 감사개요

- 기 간 : 2011. 5. 17(화) ~ 8. 26(금) (기간 중 13일간)
- 감 사 자 : 행정사무관 ○○○, 행정주사 ○○○, 시설주사 ○○○, 행정주사 ○○○, 행정주사 ○○○ 등 5명
- 대상기관 : ○○○소, ○○○소, ○○○소 등 3개 소속기관
- 감사대상 :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중점 : 세입·세출예산집행, 공사 및 시설물 관리, 물품 및 유물관리,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

II. 총 평

- 협상에의한계약의 제안서평가, 공사 계약변경, 검수처리 등 전반적으로 계약 업무 시 각종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- 금번 감사 대상 3개 기관 중 ○○○소 등 2개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합당한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직원회식 등의 명목으로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, 특근 사실이 없는데도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 직원 공직윤리 의식제고 노력이 필요
 - 관행적인 예산 목적 외 사용 근절을 위해 각 부서에 감사 사례 전파 및 향후 동일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 검토

III. 감사결과

- 행정상 조치 : 총 10건 (기관주의 3건, 주의 1건, 시정5건, 개선 1건)
 - ○○○소 : 2건 (기관주의 1건, 시정 1건)
 - ○○○소 : 2건 (기관주의 1건 시정 1건)
 - ○○○소 : 6건 (기관주의 1건, 주의 1건, 시정 3건, 개선 1건)

IV. 조치계획

-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
-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

붙임 :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.

○○○소 : 2건 (기관주의 1건, 시정 1건)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<p>■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재산 총괄청의 유권해석(국유재산과-194, 2004.2.3.)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적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으므로 국유지상에 수목(입목죽)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 ○ 그럼에도 ○○○소는 수목(매실나무 등 100여 주)이 식재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-840(188㎡)에 대하여 제한 없이 '09 .5. 2. 사용·수익허가 하였으며 감사일(5.17~20)까지 수목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○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-832, 1-835, 1-840, 1-947 등 4필지에 대한 사용·수익 허가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사용·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함에도 사용·수익 기간 중('09.1.1~11.12.31.)인 '09 .5. 2.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미 식재된 입목죽은 허가만료일('11.12.31) 이전까지 이식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고, ○ 향후부터는 사용자가 사용 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, 사용자가 사용·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	<p>시정</p>
<p>■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나 현릉관리소는 다음의 물품이 기관 내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0년 재물조사 시 사용 가능품으로 조사하였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부터는 재물조사 시 사용가능품, 불용품 등의 분류를 실제 물품 상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고 불용 등의 결정을 한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, 양여 등 처분을 조속히 실시하여 물품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	<p>기관주의</p>

지 적 내 용					처 분 요 구	비 고
	품명	수량	단가(원)	취득일자		
1	키폰전화기	1	165,000	2003.11.21.		
2	양면인쇄장치	1	303,930	2003.04.21.		
3	소방기	1	759,000	1998.03.17.		
4	예취기	1	855,800	1999.09.16.		
5	잔디깎는 기계	1	615,000	2002.09.18.		
6	전동드릴	1	74,000	2001.12.05.		
7	작업용의자	1	130,000	1999.12.03.		
<p>○ 또한 재물조사 등을 통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, 양여 등을 실시하고 그 처분물품의 회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재물조사 결과 불용의 결정을 한 18개의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물품관리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</p>						

○○○소 : 2건 (기관주의 1건, 시정 1건)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고
<p>■ ○○ 자동소화 및 감지설비 공사 추진 미흡</p> <p>○ ○○○소는 2009.12월 ‘○○자동소화 및 감지설비 공사’ 추진과정에서 소방배관 및 소화설비 등의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walk way(천정 속 이동통로) 공사를 설계변경 계약 과정에서 추가하였음</p> <p>○ 동 walk way공사 설계변경 내역에는 이동 통로 지지대인 hanging part를 155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6개만 설치하였는데도 소방감리 및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확인·정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준공 처리된 사실이 있음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▶미 시공 내역 : 27,259,000원</p> <p>○재료비 : 79개*142,000원=11,218,000원</p> <p>○노무비 : 16,041,000원</p> <p>※ hanging part : 이동 통로를 상부에 매달 수 있도록 하는 지지대</p> </div>	<p>○당초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walk way(천정속 이동통로) 공사에 대하여 재시공 하시고 향후부터는 소방감리 감독 및 소방시설 공사 추진에 앞서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·숙지한 후 계약 및 감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</p> <p>(추가시공 금액 27,259천원)</p>	<p>시 정 (추가시공/)</p>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○ ○○○소는 walk way공사가 소방감리 대상공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walk way는 소방법 시설공사업법시행령(별표1)에 소방감리대상 소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계약변경 시 동 공사의 감리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집적 감독하여야 할 사항임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■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</p> <p>○ ○○○소는 매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합당한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아래의 자료 내용과 같이 '09.12~13월에 특근매식비로 편성된 예산(2,680,000원), '10.10~11월에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(450,000원)을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업무추진비로 무단 변경 집행한 사실이 있음</p> <p>▶ 예산 목적 외 사용 내역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7 1283 834 1966"> <thead> <tr> <th>지출일자</th> <th>예산과목</th> <th>지급액(원)</th> <th>집행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'09.12.10</td> <td>210-05</td> <td>500,000</td> <td>직장단체활동 ○○○ 답사 식대</td> </tr> <tr> <td>'09.13.11</td> <td>210-05</td> <td>600,000</td> <td>○○ 자원봉사단체 간담회</td> </tr> <tr> <td>'09.13.11</td> <td>210-05</td> <td>600,000</td> <td>○○ 자원봉사단체 간담회</td> </tr> <tr> <td>'09.13.11</td> <td>210-05</td> <td>980,000</td> <td>○○ 직원 간담회</td> </tr> <tr> <td>'09.13.11</td> <td>210-01</td> <td>50,000</td> <td>소방시설 자체점검 간담회</td> </tr> <tr> <td>'10.10.25</td> <td>210-01</td> <td>130,000</td> <td>합동소방훈련 간담회</td> </tr> <tr> <td>'10.11.25</td> <td>210-01</td> <td>270,000</td> <td>유관기관 간담회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7건</td> <td>3,130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출일자	예산과목	지급액(원)	집행내역	'09.12.10	210-05	500,000	직장단체활동 ○○○ 답사 식대	'09.13.11	210-05	600,000	○○ 자원봉사단체 간담회	'09.13.11	210-05	600,000	○○ 자원봉사단체 간담회	'09.13.11	210-05	980,000	○○ 직원 간담회	'09.13.11	210-01	50,000	소방시설 자체점검 간담회	'10.10.25	210-01	130,000	합동소방훈련 간담회	'10.11.25	210-01	270,000	유관기관 간담회	계	7건	3,130,000		<p>○향후 예산집행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함</p>	<p>기관주의</p>
지출일자	예산과목	지급액(원)	집행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09.12.10	210-05	500,000	직장단체활동 ○○○ 답사 식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09.13.11	210-05	600,000	○○ 자원봉사단체 간담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09.13.11	210-05	600,000	○○ 자원봉사단체 간담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09.13.11	210-05	980,000	○○ 직원 간담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09.13.11	210-01	50,000	소방시설 자체점검 간담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10.10.25	210-01	130,000	합동소방훈련 간담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10.11.25	210-01	270,000	유관기관 간담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7건	3,1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○○소 : 6건 (시정 3건, 기관주의 2건, 개선 1건, 주의 1건)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<p>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적용 부적정</p> <p>○ 제안서 평가는 ‘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 제7조 및 별표’에 의해 평가 각 항목별(기술·지식능력, 사업수행계획서, 수행 실적 등)로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배점하도록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</p> <p>○ 2010년 2건의 물품제작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제안서 평가배점을 규정에 맞지 않게 30점 이상으로 설정한 평가항목이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음</p>	<p>○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의 규정 맞게 적용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</p> <p>*관련자 : 행정주사보 ○○○ 별정 7급 ○○○</p>	<p>주의</p>
<p>■ 용역계약 과업내용 미이행</p> <p>○ 「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」(13,200천원 / 2011.03.11)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에는 「○○○기념관」의 전시 콘텐츠를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로 된 UI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음에도 실제 어플리케이션에는 한국어로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어로 된 서비스는 2011.8월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음</p>	<p>○ 「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」용역계약 중 이행이 안된 영문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보완하여 용역을 완료 하시기 바람</p>	<p>시정</p>
<p>■ 기타소득세 세율 적용 부적정</p> <p>○ 「○○○기념관 개관 도록」을 발간 감수료를 지급(2011.4.27)하면서,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80%를 제외하고, 소득금액의 20%에 대하여만 소득세(20%)와 주민세(2%)를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적용 시 필요경비 20%를 제외하고 80%에 대한 금액으로 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(소득세, 주민세) 1,108,800원을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음</p>	<p>○과다하게 공제한 세금 1,108,800원은 납부한 세무서에 즉시 반환 조치하여 수령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, 향후에는 세율적용 시 소득세법에 맞게 공제하시기 바람</p>	<p>시정</p>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<p>■ 회계업무처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○○소에서는 2010년도 ~ 2011년도 예산을 집행 하면서 일부 회계규정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- 특근매식비를 특근 사실 없이 직원회식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, 행사관련 간담회비를 일반수용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함 · 직원회식 특근매식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○○(2010.11.06) 1,275,000원 · 행사관련 간담회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○○(2011.4.27) 1,965,000원 ○ 임차비(210-07)로 집행해야 할 차량 임차물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일반수용비(210-01)로 집행함 - 행사장 초청인사 이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○○(2011.4.26) 500,000원 - 행사장 셔틀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○○(2010.4.30) 50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향후 예산 집행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	<p>기관주의</p>
<p>■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○○소는 ○○○ 신축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120,145천원의 예산으로 3회에 걸쳐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 완료한 상태이며 2012년에도 주차장 지역 정비가 예정되어 있음 ○ 폐기물 처리는 산출된 폐기물 물량에 처리비와 운반비 단가를 곱하여 총 비용을 산출한 후 처리과정에서 실제 무게를 계량하여 정산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검토결과 산출 및 확인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- 중량 산출 관련 : 폐 보도블럭 체적에 페콘크리트 단위중량 2.3ton(건설표준품셈 참조)을 곱하고 있으나 폐 보도블럭을 직접 계량해본 결과 1㎡당 2.03ton으로 단위중량보다 11.7%(0.27ton) 가벼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향후에는 폐기물처리 용역발주를 위한 비용 산출 및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철저히 검증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○반출 물량에 대한 자체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출 차량마다 의무적으로 사진을 촬영(반출일시, 반출량, 반출성상의 종류 촬영)토록 요구하고 직원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등 검증절차 마련 하시기 바람 	<p>개선</p>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<p>상태로 반출과정에서 흙 등 이물질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계량소 확인 등의 주의를 기울일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한 상태임</p> <p>- 처리 단가 관련 : 1, 2차 폐기물처리용역은 물가정보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한 결과 톤당 18,476원~22,389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3차 용역의 경우 ○○시 소재 업체의 실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수익계약 한 결과 톤당 11,000원(이전의 54%)에 처리하면서 처리단가가 대폭 절감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실거래가격에 의한 처리비용 산출 및 계약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</p> <p>- 반출 확인 관련 : 반출되는 차량마다 책임감리 및 시공업체 측에서 확인 서명한 증명서와 처리업체의 계량 사진 및 계근 결과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, 현장에서 폐기물을 싣고 반출하는 차량의 사진이 없어 자체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책임감리 및 시공업체 서명에 의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</p>		
<p>■ 지하 기계실 향온항습기 응축수 물 처리에 관한사항</p> <p>○ 2011.4월 준공된 ○○○기념관 지하 1층 기계실에 설치된 냉·난방기 등 장비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벽면을 따라 설치된 트렌치 배수로로 유도한 후 이를 다시 지하 배수탱크로 유도하여 펌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트렌치 배수로 구배를 잘 못 시공하여 기계실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습기 및 냄새가 유발되는 등 하자보수가 필요한 실정임</p>	<p>○ 기계실 트렌치 배수로에 유도된 물이 구배를 따라 자연스럽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자시공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</p>	<p>시 정</p>